

## 시·군·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(안)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7. 14

발의자 : 이근선의원  
외 2인

### 1. 제안이유

- 지난 6월 30일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
- 지방의회의 본질인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는 바 이를 반대코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정당의 개입으로 인한 음성적인 공천현금제 부활, 편가르기식 선거 등 깨끗한 생활정치에 반하는 사항들이 예측되는 바,
- 지방의회의 본질인 집행기관 견제기능 약화와 지방행정기능의 본질상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분권에도 크게 역행할 것임.
- 세부 건의내용 : 별임 건의서 참조

## 시·군·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건의(안)

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의 골격이,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인『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,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』이라는 점에서 볼 때, 지방의회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들로 심히 우려되어, 우리 달성군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.

- 첫째, 정당공천제 도입은 현재와 같이 격심한 정당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지역구도가 토착화된 시점에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며 또한 정당개입으로 편가르기식 선거, 기초의원 장악, 음성적인 공천현금제 부활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며,
- 둘째, 중선거구제 도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도·농복합지역의 읍·면단위의 열악한 환경등으로 주민들은 여러측면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, 읍·면간, 씨족간 갈등이 또다시 초래 될 뿐 아니라,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읍·면·동의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,
- 셋째, 의원정수 20%감축과 비례대표 10%선출시는 결국 현 선출 의원 정수의 30%가 감축되는 결과로, 이는 결국 의회기능을 약화시켜, 집행부 견제등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, 지방의회제도가 후퇴 될 것이며,
- 넷째, 유급제 도입에 있어서는 도입취지를 모르는바 아니나, 현재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도입이 맞지 않으며, 구체적인 보수 규정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나 언론보도 수준을 볼 때 지역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.

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이제 겨우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 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시행될 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분권과 혁신에도 맞지 않으며

결국은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에  
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개정법률안을 철회  
하고 현행법률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.

2005. 7. 14

##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

【시·군·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 
반대 건의안】

- 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-

## 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이근선	이근선	善李 印
도원길	도원길	Jungil
배도순	배도순	達道 印